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항 공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보험이나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개정,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등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가입 대상인 경량항공기 등을 양도한 경우,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2. 2.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제60조의2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보험·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6항·제49조제6항·제5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휴업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함)
2.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8항·제49조제8항·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사업정지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함)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양도한 경우
5.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와 보장내용이 같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7.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해당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한함)

별표 11 제2호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5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별표 11 제2호머목과 버목을 각각 버목 및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법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	법 제84조제	150	300	500
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	2항제23호			
제·해지한 경우				

별표 11 제2호버목(중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23호”를 “법 제84조제2항제24호”로 하고, 같은 호 서목(중전의 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24호”를 “법 제84조제2항제25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① (생략)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보험·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u>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6항·제49조제6항·제5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휴업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함)</u> 2. <u>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8항·제49조제8항·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u>

는 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사업정지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함)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양도한 경우

5.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와 보장내용이 같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7.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해당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한함)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227